

수원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167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천
담당변호사 남다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찬
변 론 종 결 2021. 7. 23.
판 결 선 고 2021.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의 2015. 4. 18.부터 2015. 5. 11. 사이의 26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최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신용보증 계약일자	신용보증원금	보증기한	비고
2009. 4. 7.	95,000,000 원 (최종적으로 72,000,000원으로 변경)	2009. 4. 7. ~ 2010. 4. 6.(최 종적으로 2016. 4. 1.로 변경)	제1 신용보증계약
2011. 6. 2.	351,000,000 원 (최종적으로 296,400,000원으로 변경)	2011. 6. 2. ~ 2012. 6. 1.(최 종적으로 2016. 5. 27.로 변 경)	제2 신용보증계약
2009. 10. 30.	200,000,000 원 (최종적으로 144,000,000원으로 변경)	2009. 10. 30. ~ 2010. 10. 29.(최종적으로 2015. 10. 23. 로 변경)	제3 신용보증계약

2) 제1 내지 3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C의 대표이사인 B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은 제1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09. 4. 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제2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1. 6. 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9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제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09. 10. 30.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그 후 C이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D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5. 11. 11.과 2015. 11. 18. 제1 내지 3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C과 B를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85855)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1. ‘C,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931,072원과 그 중 373,058,742원에 대하여는 2015. 11. 11.부터, 147,654,402원에 대하여는 2015. 11. 18.부터 각 2016. 1. 2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B는 2015. 4. 18. E, F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4,000,000원으로 하되, 19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E이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계약금 29,4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며, 잔금 74,600,000원은 2015. 5. 11.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여 2015. 4. 18.부터 2015. 5. 11.까지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그 중 260,000,000원을 아내인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2004다2764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5. 4. 18.경 원고와 C,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C이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2015. 4. 18. 무렵 이미 원고의 C 및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D이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후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기흥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주식회사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B가 피고에게 2015. 4. 18.부터 2015. 5. 11.까지 사이에 2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B는 E, F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294,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4,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더러, 위 돈마저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카드대금이나 각종 공과금 납부,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에게 2015. 4. 18.부터 2015. 5. 11.까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6. 6. 1.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 723,782,000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당시 경제적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남편인 B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6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급대금은 계약금 37,170,000원, 중도금 520,380,000원, 잔금 185,850,000원 등 합계 743,400,000원이고,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용 13,905,000원을 더하면 분양대금은 총 757,305,000원인 점, ② 그런데 피고는 2016. 1. 20. L로부터 40,200,000원을 차용하여 2016. 1. 22.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40,119,540원을 납입한 점, ③ 또한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M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6. 8. N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N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30,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39,00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돈 103,000,000원과 2016. 7. 초경 O 및 P로부터 차용한 60,000,000원의 합계 163,000,000원으로 2016. 7. 21.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중도금 및 발코니 확장비용 등으로 164,397,300원을 납입한 점, ④ 나머지 중도금은 2016. 7. 29.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Q조합, 채권최고액 446,04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Q조합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 납입기일은 2018. 11. 30.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일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때이므로, 위 잔금은 피고가 N에게 임대한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M호의 임대차보증금 상승분과 그 사이 발생한 피고의 소득 등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로부터 26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B가 운영하던 C이 2015. 8. 13.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지급 연체로 부실처리되었는데,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종 통신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가 B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각종 통신사로부터 입금된 34,769,845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시점은 2015. 4. 18.부터 2015. 5. 11.까지인데 피고가 I은행 계좌로 각종 통신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은 시점은 2016. 6. 10.부터 2016. 7. 30.까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시점과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R'이라는 S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돈은 피고가 S으로부터 위 대리점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B가 2015. 4. 18.부터 2015. 5. 1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해일, 판사 신유리, 판사 이진규